

2014년 도
제83회 이사회 의결(안)



2014. 12. 29

성북구도시관리공단

목 차

의결안

2014 - 23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

----- 1

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(안)

□ 개 요

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·적용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현황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을 명문화하고자 함

□ 관련근거

-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5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(2014. 6. 30)

□ 개정방향

- 직무 회피 상담대상 확대 적용
-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·개정시 국민권익위원회 의무통보
-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실적 상·하반기 의무제출

□ 개정내용

-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항 제4호 ~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공단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
 - 5. 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 - 6. 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- 임직원 행동강령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제61조(행동강령의 제·개정 통보)

이사장은 행동강령을 제·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- 임직원 행동강령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2조(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행동강령 제출)

① 이사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운영지침의 서식(별지 11호)에 따라 ‘성북구도시관리공단 행동강령 운영실적’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공단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(<http://cry.acrc.go.kr>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1. 상반기 운영실적 : 7월 31일

2. 하반기 운영실적 : 다음해 1월 31일

신·구조문 대비표

○ 서울특별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7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</p> <p>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이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본인, 본인의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」. 이하 같다)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</p> <p>2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</p> <p>3. 기타 임직원과 학연·지연·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</p> <p><u>4 ~ 6 < 신 설 ></u></p> | <p>제17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</p> <p>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 이 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본인, 본인의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(「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」. 이하 같다)이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</p> <p>2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</p> <p>3. 기타 임직원과 학연·지연·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</p> <p><u>4. 공단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</u></p> <p><u>5. 학연, 지연, 종교,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</u></p> <p><u>6. 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</u>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<u>제61조 < 신 설 ></u></p> <p><u>제62조 < 신 설 ></u></p> | <p><u>제61조(행동강령의 제·개정 통보)</u> <u>이사장은 행동강령을 제·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62조(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행동강령 제출)</u> <u>① 이사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서식(별지 11호)에 따라 ‘성북구도시관리공단 행동강령 운영실적’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이사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공단 행동강령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(http://cry.acrc.go.kr)에 입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상반기 운영실적 : 7월 31일</u> <u>2. 하반기 운영실적 : 다음해 1월 31일</u></p> |